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1999. 7. 1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포항종합제철(주)의 부당 지원행위 (9902독관0186)</p>	<p>포항종합제철(주)는 '97.8.30.부터 '99.3.2.까지의 기간 중 한일은행에 특정금전신탁 150억원을 예탁하고 동일기간 중에 한일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열회사인 창원특수강(주)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동일기간에 발행하여 한일은행과 신한증권이 인수한 다른 기업어음의 평균할인율보다 1.21% 내지 4.8% 낮은 할인율인 10.2% 내지 10.6%의 할인율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창원특수강(주)에게 약 504,646천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창원특수강(주)로 하여금 "선재"생산부문에서의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인수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p>	<p>◎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353,200천원</p>
<p>제주지역 3개 석유판매대리점 및 LG-Caltex정유(주)의 부당한 공동행위 (9902광사0170) (삼화석유(주), (주)한라석유, 삼남석유(주), LG-Caltex정유(주))</p>	<p>삼화석유(주) 등 제주지역 3개 석유판매대리점 및 LG-Caltex정유(주)는 '98.1.9.부터 '99.3.4.까지의 기간 중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판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자신들이 정유사로부터 구입한 휘발유가격이 각각 상이하고, 삼화석유(주)의 경우에는 '98.9.3.과 '98.9.24. 두차례에 걸쳐 SK(주)의 휘발유 가격인하 조치로 독자적인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8.1.9.부터 '98.5.31.까지의 기간 및 '98.11.30.부터 '99.1.28.까지의 기간 중에 휘발유의 리터당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98.6.1.부터 '98.11.29.까지의 기간과 '99.1.29.부터 '99.3.4.까지의 기간 중에는 2개사씩 각각 1원의 차이를 두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휘발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주지역 석유류 도매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제주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단위:천원) · 삼화석유(주) : 40,000 · (주)한라석유 : 20,000 · 삼남석유(주) : 10,900 · LG-Caltex정유(주) : 25,000</p>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한라주유소의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 위반행위 (9905광고0750)</p>	<p>한라주유소는 석유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자신의 주유소에 설치된 폴사인 등에 SK(주)의 석유제품임을 나타내는 상표를 표시한 상태에서 '98.12.17. 쌍용정유(주)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현대주유소로부터 경유 3,000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SK(주)의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자신의 영업장소에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만을 표시·광고한 채로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의 공급자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 위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주유소 출입구 등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지크기(78.8cm×109cm)로 7일간 게시하여 공표토록 함</p>
<p>원주오토바이협회의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 행위 (9904단체0643)</p>	<p>원주오토바이협회는 '96년 12월말경 원주시 평원동 소재 식당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오토바이 부품가격을 결정한 후 동 부품가격표를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원주시내 오토바이 수리업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오토바이 보관료의 경우는 50,000원, 사고 오토바이의 경우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견적만 하고 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찾아갈 경우에는 견적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도록 의결하는 등 오토바이 부품, 보관료, 견적료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주지역 오토바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구성사업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체에의 가입이나 탈퇴 및 오토바이 수리센터의 휴일 지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칙에 회원 탈퇴의 원칙적 금지, 자신이 정한 부품가격 등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납부 등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신의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p>	<p>◎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1999. 7. 23.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비씨카드(주)의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상의 불공정약관조항 (9812약일2243)</p>	<p>비씨카드(주)는 자신이 작성하여 고객과 신용카드계약 체결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에서 통상의 금융대출은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경제사정 호전 등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에는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 상환일 이후의 이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p>	<p>◎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p>

# 심 결 사 례

사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p>출부터 상환까지의 기간만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며, 설혹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여대출기간에 대한 이자금액보다 적은 것이 통상의 경우이며, 카드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현금서비스는 그 성격상 카드회원에게 단기간 소액의 금전을 간편하게 용자해주고자 하는 특수목적에 따라 마련된 일종의 금전사용대차이고 따라서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게 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중도에 상환할 수 없고 지정된 카드대금 납부일에만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중도에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카드대금 납부일까지의 이자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p>	

1999. 8. 9. 심결

사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p>(주)보원의 부당한 광고 행위 (9905광고0662)</p>	<p>(주)보원은 '9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중 한국일보 등 3개 일간지 등을 통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황토매트에 대한 광고를 총 4회에 걸쳐 함에 있어서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황토매트가 필하였다고 광고한 Health-Q 검사는 한국전기전자연구원이 의뢰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행하는 임의검사로서 전자기기의 자기장의 세기가 2mG 이하일 경우에 자기장 차단필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동 검사필증의 교부가 인체에 대한 유·무해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사용될 수 없음을 동 연구원에서 확인하고 있고, 또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인체에 대한 유·무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해도 해롭지 않은 헬스 큐(Health-Q)마크는 전문공인기관에서 인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제품이 Health-Q 검사를 필하였음을 이유로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하여도 해롭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의 제품이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고 각종 통증 및 질환에 대한 효능 및 효과가 객관적으로 인</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p>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팔·다리·온몸이 저리고 쓰시는 분,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 유해 노폐물의 효과적인 배출 .....”이라고 표시하여 의학 적 치료영역에 속하는 각종 통증이나 질환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으며, 최근 상당기간 거래가격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가로 판매하던 상품을 특별히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의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등 (9903구사0299)</p>	<p>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은 자신의 각 대리점들은 자신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리점 계약해지시 개척비, 장비비 등 기존의 투자자본의 회수 및 판매미수금의 처리 등이 곤란하여 대리점의 영업활동은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97년 초 자신의 구미대리점에 대해 「능금주스」의 '97년도 월별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동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공급중단과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98년 2월에는 자신의 서울사업소 관할 대리점의 대리점 약정을 갱신하면서 '98년도 월별 판매목표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98.3.19. 판매실적이 저조한 19개 대리점에 대하여 「'97년 1/4분기 목표 대비 80% 미달 대리점은 약정을 해지한다」는 예고문서를 통지하는 등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해당 대리점에 대해 판매 독려 차원을 넘어서 판매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을 주는 등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였으며, 대리점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거래지역과 거래상대방 및 판매가격 등은 대리점 자신의 영업능력 및 계획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리점거래약정서에 주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판매지역을 벗어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이 정한 유통단계별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을 지키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등의 재판매가 격유지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29조제1항 위반</p>	<p>◎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사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중앙엠엔비(주)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9811유거2001)</p>	<p>중앙엠엔비(주)는 '98.10.23. 기혼여성지인 "여성중앙21" 창간호를 1부당 8,900원에 판매하면서 동 여성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여성중앙21"을 구입한 일반소비자 모두에게 44,226원 상당의 "나드리 레티놀 3000IU 사이버21"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제품의 판매에 부수하여 적법한 소비자경품류의 가액한도인 3,000원을 41,226원 초과하여 경품류를 제공하는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p>	<p>◎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p>
<p>한국교육방송원의 거래 상지위의 남용행위 (9808독관1344)</p>	<p>한국교육방송원은 방송을 매개로 하는 출판물의 제작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출판대행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만든 원고에 대하여 출판대행사업자들에게 출판물의 발행 및 보급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인세 등을 수입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방송교재의 출판물제작발주에 있어서 독점적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거래하는 출판대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상에 납부금액을 연체하는 경우 1일당 2.5/1,000에서 5/1,000(연 90%~182%)에 이르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실제로 '97년 4개의 출판대행사에 대하여 연 91%의 이율로 총 3,115천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출판대행사업자가 인세 등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통상 일반금융기관의 연체요율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토막상식**

**계열분리(系列分離)** 계열분리는 계열사를 거느린 소위 대기업그룹의 개별 계열회사를 따로 떼어내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대우그룹 처리 해법으로 제시된 계열분리 방식은 궁극적으로 그룹 해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얽히고 설킨 국내외 부채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대우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열분리 수단으로는 통상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팔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따라서 대출금 출자전환 후 합작파트너를 구하지 못하거나 매각이 안되면 채권단이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등 채권단인 각 계열사의 주거래은행이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일단 그룹과 분리된 계열사는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열분리를 통해 부실사와 우량사가 구분되면 자산부채 관계가 명백해지므로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이나 자금지원 등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대우그룹에 대한 계열분리는 비상책이므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시와 정산을 나중에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